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집행부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25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검토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0.(금)

2. 개정이유

-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, 형사사건 지급기준을 추가

3. 주요내용

-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확화 및 형사사건 지급기준 추가(별표)
 -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최종심 명문화 및 상고심 종국판결 시 승소 사례금이 1/2로 줄어드는 불이익 개선
 -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(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)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지급 명문화
 - 직무관련사건 및 악성민원 위법행위 법적대응을 위한 형사사건 지급 기준 추가
 - 출장비 지급 관련 규정 현행화

4. 참고사항(현행조례 등)

- 현행조례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8. 1.~8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의 고도화와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수요가 증가하고,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※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현황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(9월까지)	고문변호사
건 수	5건	19건	30건	13건	2명

- 주요 내용은 안 별표(소송비용 지급기준) 중
 -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따른 착수금은 “소송물가액”을 “청구취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소송물가액”으로 하고, 승소사례금은 “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”을 “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”으로 개정 하였으며,

- 공무원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형사피소(고소 등)나 악성민원 위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“형사사건”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법률행정 서비스 향상과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권익보호 및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는 등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현행조례】

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5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재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직무 등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구(소속기관 포함)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
2.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
3. 구 소속공무원(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4. 각종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
6.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7.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
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재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, 소송현황 등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자문회의 등) 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

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전략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,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.

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
3.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
4.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5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소송비용 등) 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,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)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·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,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1.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
2. 해당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제6조의3(소송비용 특례)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

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] 소송비용 지급기준 (제6조제1항 관련)

구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
	내 용	착 수 금	승소사례금
행정소송 및 민사소송	1. 신청사건 · 변론이 없는 경우 · 변론이 있는 경우	200,000원 이내 300,000원 이내	없 음
	2. 본안사건(소송물가액기준) · 2,000만원 미만 · 2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 ·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·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·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·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· 10억원 이상	800,000원 이내 1,500,000원 이내 2,000,000원 이내 2,500,000원 이내 3,000,000원 이내 3,500,000원 이내 4,000,000원 이내	60%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
	3. 상고심	본안사건 착수금의 1/2 이내	〃
	4. 환송심	본안사건 착수금의 1/2 이내	〃
	기 타	1. 인지대 2. 송달료 3. 검증비 4. 감정료 5. 출장비 및 여비 6. 복사료 등 기타 경비	실 액 실 액 실 액(다만,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,000원을 별도 지급) 실 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」중 4 급 공무원 해당액 실 액

※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